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2. 23. ----- 사하구청장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2. 23.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2. 24.(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정석한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 지원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사업으로 추진된 다대동 120-28번지에 공립보육시설 다송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위탁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다송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에 포함(안 제2조제9호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사하구 다대2동 일원의 영·유아 보육대상자들의 건전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송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보호자의 사회적,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가정복지증진과 시민상 구현에 일조를 기한다고 판단되며,
- 특히, 영·유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설치·운영 및 보조금지급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